「평창군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○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6년 10월 2일, 김성기 의원 발의

○ 회부일자: 2026년 10월 8일 회부

○ 상정일자: 제31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(2026년 10월 13일 상정・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김성기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❍ 평창군의 정원 조성・관리와 정원문화 활성화 및 정원산업 진흥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, 군민정원사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실효성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원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,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가. 목적, 정의 등 기본사항 규정(안 제1조~제3조)

나.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육성계획 수립 규정(안 제4조)

다. 정원의 조성 및 지원 규정(안 제5조)

라. 정원문화 활성화 및 정원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(안 제6조)

마. 정원지원센터 설치·운영 규정(안 제7조)

바. 군민정원사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
사. 위원회 설치 및 구성, 운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~제19조)

아. 경과조치(부칙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경숙)

❍ 본 조례안은 평창군의 정원 조성·관리와 정원문화 확산을 통해 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, 특히 군민정원사 양성·활용 및 정원산업 육성·진흥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.

❍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과 자연환경 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음. 이에 따라 지역 특성을 살린 정원 조성과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범위에 해당하며, 관련 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.

❍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규정하고, 안 제11조는 군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운영 및 실질적인 사업 활용·지원 방안을 명시함. 또한 안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 관련 위원회와 자문단의 설치·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.

❍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정원 관련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, 군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의 정원문화가 정착·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,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「회의록 참조」

5. 토론 요지:「회의록 참조」

6. 심사 결과: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:「없음」

8. 기타 사항:「없음」